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으로

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

감사 요청을 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 비율이

30%에서 20%로 완화됨에 따라,

조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

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

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